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영덕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5. 1.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기타	금액	
계			20건	13	7	1	200,035	4	344,530	2	52,752
1	☆☆☆☆☆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예외 사용자 시간외 근무 부적정	1	-	-	-	-	-	1	1,127	
2	☆☆☆☆☆	근무성적평정업무처리 부적정	-	1	-	-	-	-	-	-	
3	☆☆☆☆☆	명예퇴직 후 재임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1	-	-	-	-	-	1	51,625	
4	☆☆☆☆☆	인사운영 부적정	-	1	-	-	-	-	-	-	
5	♂♂♂♂♂	민간행사보조사업 수익금 등 정산 처리 부적정	1	-	-	-	-	-	-	-	
6	★ ★ ★ □ □ □ □ □	물품 구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	1	-	-	-	-	-	-	
7	□ □ □ □ □	쓰레기 종량제 제작 및 관리 부적정	1	-	-	-	-	-	-	-	
8	▲▲▲▲▲▲▲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1	-	-	-	-	-	-	-	
9	○○○○○	법정 의무소득 대상 관리 소홀	1	-	-	-	-	-	-	-	
10	◇ ◇ ◇	사도개설 업무처리 부적정	1	-	-	-	-	-	-	-	
11	♠ ♠ ♠ ♠ ♠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부적정	-	1	-	-	-	-	-	-	
12	♠ ♠ ♠ ♠ ♠ 등 10개 부서	농지 이용실태조사 소홀	1	-	-	-	-	-	-	-	
13	◇ ◇ ◇	군도00호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1	-	-	-	-	-	-	-	
14	♣♣♣♣♣♣♣♣ 등 5개 부서	*****골프장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1	-	-	-	-	-	-	
15	◇ ◇ ◇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	1	200,035	1	144,889	-	-	
16	♂♂♂♂♂ ●●●●●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선정 부적정	-	1	-	-	-	-	-	-	
17)))))))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	-	-	-	1	145,136	-	-	
18	◆ ◆ ◆ ◆ ◆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	-	-	1	26,899	-	-	
19	♣♣♣♣♣♣♣♣ 등 2개 부서	피난 및 방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	1	-	-	-	-	-	-	
20	☺☺☺☺☺ 2개 부서	영덕군 ***** 건립공사	1	-	-	-	1	27,606	-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예외 사용자 시간외 근무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에서는 소속 공무원 및 파견근무자들에 대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5호, 2024. 8. 29. 일부개정)의 ‘VI.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삽입 등 초과근무 수당의 부정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전부 예규 제293호 2024. 7. 29. 일부개정) ‘Ⅲ. 근무기강의 확립’의 용어의 정의 편에 따르면 출근은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에 도착하는 것, 퇴근은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영덕군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2. 9. 28. 지방****

@@@을 *****으로 파견근무(2022. 10. 1. ~ 2023. 12. 31.) 명하였고 이후 *****에서는 지방**** @@@을 사무국 소속 ****팀장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2022. 10. 12. 지방**** @@@은 파견근무지인 *****에서 시간외 근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예외사용자 신청을 하여 파견근무지에서 인사랑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퇴근을 체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파견근무기관인 *****이 아닌 영덕군의 초과근무명령승인을 통해 시간외 근무 및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표 1] ***** 파견근무 내역

소 속	직 급	성 명	파견근무지 (직위)	당초 파견기간 (파견복귀 시점)	GVPN 예외사용자 승인일자
☆☆☆☆☆	*****	@@@	***** (*****)	2022.10.1.~ 2023.12.31. (2023.11.1. 파견복귀)	2022.10.12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영덕군으로부터 초과근무명령 등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 근무를 하는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지에서의 시간외 근무내역 및 근무 시작·종료 시간 이전·이후 근무지를 벗어나 자택에서의 출·퇴근 체크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간외 근무 수당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 삽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정행위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자체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등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간외 근무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에서 파견근무중인 지방**** @@@에게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예외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 출퇴근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초과근무명령 등을 승인하였음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2023. 10. 10. ~ 2023 10. 26. 기간 지방**** @@@이 파견근무지인 *****을 벗어나 퇴근이후 자택(*** **)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로 접속하여 시간외 근무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퇴근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수령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표 2] 근무지를 벗어나 자택에서의 시간외 근무 내역

관련자	근무일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수당 시간(분)	GVPN접속시간 (접속위치)	시간외 근무 사전 신청 시간
합계	5 일			953	15 시간	187,960원 수령
@@@ (지방****)	X					
"						
"						
"						
"						

그 결과 근무지 이외의 장소(자택)에서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이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산입되는 등 시간외 근무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부정수령액(187,960원) 환수 및 부정수령액의 5배에 대한 추가징수, 근무 명령 제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직무대리, 전보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 내지 제31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70점)과 경력평정점(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를 조정할 수 있되,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승진 임용할 때에는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영덕군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70점)과 경력평정점(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5월 30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업무를 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제대로 반영해야만 하며 만약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 등이 발생하여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조정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2021. 11. 30. 영덕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2021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표준지방 인사관리시스템(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18번으로 서열이 결정되었음에도 임의로 인사랑에 37번(점수 47.7점)으로 입력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 등의 절차 없이 2021. 11. 30. 임의로 변경된 근무성적평정점을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표 1]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내역

구 분	대상자	근평위원회 서열 결정	인사랑 서열 입력				승진후보자명부 (2021. 11. 30 기준)		
			정 당		부 당		정당	부당	비고
			순위	점수	순위	점수			
2021년 하반기	@@@	[Redacted Content]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의 경우에도 2021년 하반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2022. 5. 27. 영덕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2022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인사랑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지방행정서기 @@@ 등 8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결정과 상반되는 순위를 입력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사후 확인 등의 절차 없이 2022. 5. 31.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표 2]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내역

구 분	대상자	근평위원회 서열 결정	인사량 서열 입력				승진후보자명부 (2022. 5. 31 기준)		
			정 당		부 당		정당	부당	비고
			순위	점수	순위	점수			
2022년 상반기	@@@	X							
"	@@@								
2022년 상반기	@@@								
"	@@@								
"	@@@								
"	@@@								
"	@@@								
"	@@@								

그 결과, 지방행정주사보 @@@ 등의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의 사후 확인도 받지 않은 채 조정·확정되어 그 순위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그대로 반영되어 2021. 11. 30. 기준 지방***** @@@(21위→22위), 2022. 5. 31. 기준 지방***** @@@(3위→6위), 지방***** @@@(1위→2위), 지방***** @@@(2위→1위)로 명부순위가 상향되거나 하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지방***** @@@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가 3위 → 6위로 하향 조정되어 2022. 7. 1. 승진의결 후 상위직급 승진임용일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순으로 차등 승진임용 하고 있는 영덕군 인사 행정시스템에 따라 2022. 7. 4. 승진임용(승진후보자명부상 5번까지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후 2022. 9. 3. 지방*****로 승진임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③ 관련자 BBB(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명예퇴직 후 재임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직무대리, 전보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4 내지 제8조의5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따른 환수금의 산정은 아래 [표 1]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표 1]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3')

환수금 적용대상	환수금 산정기준
2. 법 제66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임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환수금을 상기 [표 1]의 방법으로 산정 후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 환수금이 적정하게 납부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8. 6. 1. 지방***** @@@에게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113,324천 원을 지급 하였음에도 2022. 7. 1. 별정직 공무원(6급 상당)으로 재임용 된 @@@에 대한 환수금 산정 및 그에 따른 고지서 등을 발부하지 않아 환수금이 납부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2] @@@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내역 현황

연번	일시	구분	대상자	내역	비고
1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2					

그 결과, 재임용 시점에서 지체 없이 환수되어야 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특정인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명예퇴직 후 2022. 7. 1.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에 대한 환수금(51,625,390원)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관련자 AAA(병합), BBB(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직무대리, 전보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중앙부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결원 보충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결원보충에 대한 절차를 진행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2. 7. 1.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승인권자인 *****로부터 *****로 파견 근무 중인(2022. 2. 3. ~ 2023. 2. 2.) 지방***** @@@에 대한 결원보충에 대해 승인 등을 득하지 않았음에도 @@@ 파견에 따른 승진요인 1명을 책정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 7급 1명이 시설 6급으로 승진임용 되도록 하였다.

[표 1]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 승인 현황

인사위원회 관련			파견 현황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승인
일 시	시설6급 승진요인	승진임용	기 간	파견자	
(내용 없음)					

그 결과 결원보충에 대한 승인 등이 없는 상태에서 **7급 1명이 **6급으로 승진임용되었다.

2. 근속승진자 교육 파견에 따른 인사요인 책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8호, 2024. 6. 27.) 제47조 (구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VI. 승진임용 2. 근속승진)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영덕군에서는 2021년까지 매년 2명을 중견간부양성 교육자로 선정하다가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는 매년 3명을 중견간부양성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있으며 중견간부양성 교육에 따른 후속승진의 경우 2021년까지는 매년 동일 인원이 교육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사유로 최초 결원보충 시점 이후로 후속 승진 요인을 책정하지 않다가 2022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자 1명을 후속승진 요인으로 책정하였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근속승진한 자가 승진하거나 중견간부양성 교육대상자로 교육과견 될 경우 해당직급에 대한 인사요인은 감원하고 종전직급에 대한 인사요인은 증원하도록 인사요인을 반영·책정하여 인사행정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영덕군 ☆☆☆☆☆에서는 2022년 중견간부양성교육 대상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된다는 사유로 추가로 후속 인사요인을 책정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6급 근속승진여부를 확인하여 인사요인을 책정 해야만 하고 만약 인사요인책정 후 근속승진자 포함여부를 알수있었다면 당초 책정하였던 인사요인 중 근속승진자 인원만큼은 다음 인사위원회에서는 감요인 으로 책정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1. 12. 23.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2022년에 중견간부양성 교육대상자가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었다는 사유로 6급 1명을 승진요인으로 책정 및 승진의결 하도록 한 후, 2021. 12. 24. 경상북도로 2022년 중견간부양성 교육대상자 3명을 제출하면서 상기 대상자 중 1명인 지방**** @@@의 경우 7급 → 6급으로 근속승진된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2022. 7. 1. 인사위원회에서 2021. 12. 23. 인사위원회에서 장기교육으로 책정한 인사요인 1명을 감요인으로 책정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결론적으로 6급 근속승진자후속으로 6급 1명이 승진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2] 근속승진자 교육파견에 따른 6급 승진 부적정

구 분	7→6급 인사요인	2022년 6급 중견간부양성 대상자	비고 1	비고 2
(The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그 결과,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6급 1명이 추가로 승진임용 되었다.

3. ***** 결원보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하위 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행시기별 영덕군에 두는 4급, 4·5급, 5급, *** 정원은 아래 [표 3]과 같이 되어 있다.

[표 3] 시행시기별 영덕군 4급·5급 및 *** 정원 현황

시행시기	총합계	*** (** 제외) 직위				*** 직위	
		소계	4급	4·5급	5급	소계	***
2024.1.1. ~감사일 현재	37	35	2 - ****(1)	3	30	2	2

한편, 영덕군 ☆☆☆☆☆에서는 2021. 1. 1. ***** 직위를 ***** 단수직렬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사면허보유자 등 적격자가 없다는 사유로 감사일 현재 까지 공석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 경우 2023. 9. 27. 복수(***** + *****)에서 ***** 단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단수직렬로 되어있는 ***** 직위를 제외한 숫자로 4급, 4·5급, 5급 정·현원을 관리하되 *****의 경우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할 경우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 및 [표 5]와 같이 2024. 1. 1. ~ 현재까지 2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직위가 있는 4급 및 5급에 대해서는 결원발생에 대한 인사요인을 책정 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였음에도 *****의 경우 계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해당 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11명이 등재가 되어있었음에도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결원을 산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이 계속적으로 공석이 되도록 하였다.

[표 4] 2024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4급·5급·***** 관련)

인사위원회	인사요인 (직위보유 관련 직급만 발체)			비고 (*****→***** 승진후보자 명부인원) ***** 결원 미산정 (11명 등재)
	인원	내용	승진임용	
2024. 5. 17	6명 결원산정	5급 6명 (**5, ****1)	5급 6명	
2024. 6. 19	2명 결원산정	4급 2명	4급 2명	"

[표 5] 2024년 영덕군 4급·5급 및 *** 정원대비 현원 현황

기 준 시 점	직위보유(4급·5급 및 *****) 정·현원				비 고 (***** 정·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비고
	합계	합계	4급·5급	***			
2024. 2. 29.	37 (**** 제외 : 36)	35	34	1	2	1	-1
2024. 3. 31.	37 (**** 제외 : 36)	35	34	1	2	1	-1
2024. 8. 31.	37 (**** 제외 : 36)	35	34	1	2	1	-1
감사일 현재	37 (**** 제외 : 36)	35	34	1	2	1	-1

그 결과, 인사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원 보충에 필요한 승진임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조례개정시점 이후 승진할 수 있었던 농촌지도사 1명이 계속적으로 ***** 임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 AAA, BBB(병합)는 **혼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③ 관련자 CCC(병합), DDD(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민간행사보조사업 수익금 등 정산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 〃〃〃〃〃에서는 **** 축제와 관련한 보조금 교부 및 축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2022 영덕****축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였다.

[표 1] 보조금 교부 현황

사업 년도	보조사업자(대표)	통계목	보조금	교부일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 완료보고	비고
2022	(The content of this row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1. 지방보조사업 정산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2월 이내)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ㄱㄱㄱㄱㄱ에서는 ‘2022 영덕****축제’ 사업완료 후 ‘영덕****축제추진위원회(대표 @@@)’로부터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 보조금 관련 법령과 교부조건에서 정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적정히 수행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실적보고서 내용을 보완한 후 보조금을 확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행사 추진에 따른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1)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증빙서류의 추가 확인 등 시정조치를 소홀히 한 채 2022. 10. 20. 기관 내부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을 종료하고, 법령에서 정한 정산검사 완료에 따른 보조금 확정 통보 또한 수행하지 않았다.

[표 2]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내역(보조금 분)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비고
		금액	비율(%)			
계	210,000,000	210,000,000	100	0		
보조금	210,000,000	210,000,000	100	0		

※ 영덕군 제출자료 재구성

1) 교부조건, 법령 등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입금내역만 증빙자료로 제출

2. 수익금 정산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2월 이내)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ㄱㄱㄱㄱㄱ에서는 ‘2022 영덕****축제’ 보조금을 축제 추진을 위해 ‘영덕****축제추진위원회(대표 @@@)’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의 목적, 수익금 발생 여부 등 당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에는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교부조건에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 및 교부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수익금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련 법령과 교부조건에서 정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적정히 수행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실적보고서 내용을 보완한 후 수익금 집행액과 반환액을 확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영덕****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수익금 내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교부조건에서 정한 ‘행사(축제)의 입장료 및 체험료 등 기타 수익금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행사(축제)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 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수익금에 대한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2022. 10. 20.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만을 검토하여 사업결과 보고하였으며 축제행사에 집행하지 않고 남은 수익금을 반납받지 않고 방치하였다.

[표 3]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내역(수익금 포함)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비고
		금액	비율(%)			
계	237,373,000	226,588,100	100	10,784,900		
보조금	210,000,000	210,000,000	100	0		
수익금 (협찬금포함)	27,373,000	16,588,100	60.6	10,784,900		

※ 영덕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상기 1, 2를 종합하여 보면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흡한 정산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행사 수익금에 대해 세입조치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일실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정산된 수익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산 검사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납 받으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구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
내 용

영덕군 ★★★, □□□□□에서는 2023년 물품 구매 적격심사를 통해 아래 [표 1]과 같이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계 약 명	계약일	계약금액	입찰공고일	계약상대자
(내용이 삭제된 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납품이행 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 구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재난 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에서는 물품 구매의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했으며,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하거나 유효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 하여야 했으며, 물품 구매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1. 관급자재 **** 제작구매 적격심사 부적정(★★★)

영덕군 ★★★에서는 ‘2023년 *****(**) 확충공사 관급자재 **** 제작 구매’의 응찰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당일인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완요구 없이 심사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는 **혼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③ 관련자 CCC, DDD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 · 시 정 요 구

제 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 □□□□□에서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처리용 봉투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융기관(****, ****)에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표 1] 영덕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현황

연도	수량(장)	금액(천원)	분할계약 횟수	계약방법	비고
합계	8,183,200	537,523			
2021년	1,280,000	99,050	8회	조달(3자 단가)	
2022년	2,450,000	151,449	13회	조달(3자 단가) 및 수의계약	
2023년	2,550,000	169,266	5회	조달(3자 단가)	
2024년	1,903,200	117,758	5회	조달(3자 단가)	

* 영덕군 □□□□□ 제출자료 재구성

** 봉투 규격(종량제봉투10L, 20L, 50L, 재사용 20L, 공공용 50L, 음식물 봉투 2L, 5L, 10L, 20L)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입 분할 발주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4)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달청 고시 2021-5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 기준」 제3조(2단계 경쟁 대상)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수요물자가 1억원 이상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 요청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일 경우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수요기관에서는 1억원이상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을 조달 구입 제작 할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제안요청을 하여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2단계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억원 이상의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구입하면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안요청을

4) 조달사업법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하여 2단계 경쟁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건당 1억원 이하로 분할 발주하여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을 회피하여 *****와 계약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격인하율⁵⁾ 적용할 때와 비교하면 43,845천 원 정도의 예산절감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 적용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영덕군 계약(A)	2단계 경쟁(B)	차액(A-B)	비고
합계	438,473	394,628	43,845	
2022년	151,449	136,305	15,144	
2023년	169,266	152,340	16,926	
2024년	117,758	105,983	11,775	

* 2단계 경쟁 90%적용 기준

** 영덕군 □□□□□ 제출자료 재구성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검수(품질 관리) 부적정

환경부 지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종량제봉투의 검수방법에 따르면 구입시에는 검수 공무원이 직접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 ***)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납품량 30만매당 무작위로 1매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시료 전량 적합시 전체 물량을 합격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검수공무원은 시료를 개봉이 불가능한 봉투 등에 담아 봉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겉모양, 찢수, 인장강도, 신장율, 노치후 인열강도, 함량 및 접합상태 등에 관하여 ***** ***)의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라 가격제안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을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 90%이상로 제안하도록 규정

아울러, 봉투제작업체로부터 제작 완료를 통보 받은 검수공무원은 계약된 물품 전량을 인수하여 관리가 가능한 창고에 입고시킨 후 지체없이 검체를 채취하고, 납품된 물품은 시험분석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업체별로 Lot번호를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봉투제작 업체로부터 제작완료를 통보 받을 때에는 물품을 전량 인수하여 30만매 당 무작위로 지체 없이 검체를 직접 채취하여 공인기관⁶⁾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를 직접 통보를 받은 후 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구입하면서 물품을 전량 인수한 후 검수 공무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규격 및 품질이 적합한지 분석의뢰를 하여 적합한 경우 검수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818만 3천장에 대하여 제작업체에서 검체 채취 및 분석의뢰한 결과로 검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표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검체 채취 분석의뢰 현황

연도	제작 수량(장)	검체채취 및 분석의뢰	비고
합계	8,183,200		
2021년	1,280,000	제조업체	
2022년	2,450,000	제조업체	
2023년	2,550,000	제조업체	
2024년	1,903,200	제조업체	

* 영덕군 □□□□□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서 검체 채취 및 분석의뢰 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품질의 공정성이 결여 되었다.

6) 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3. 종량제 봉투 관리 부실 및 부정 유통 의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출납명령)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하며,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출납을 명할 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출납 시기, 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引受)하는 자와 물품출납 공무원에게 인도(引渡)하는 자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관리대상의 물품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물품대장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물품의 이동상황 정리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품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종량제 봉투 등의 사양)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및 시장폐기물 전용마대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 명칭 및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봉투·제작 시 담당자와 제조업체에서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금지를 위하여 민간 제조업체와 계약체결 시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금지 의무,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량제 봉투의 검수 시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영덕군에서는 종량제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해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 등 Lot번호를 부여한 QR코드를 봉투 겉면에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종량제 봉투 제작·구입할 경우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해 수량 및 크기 등을 확인하고, 일련번호와 제작일 등이 표기된 Lot번호를 확인 한 후 제작한 수량의 총량관리의 수량과 적합한지 확인 후 검수 하여야 하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제조업체에서 임의로 추가 제작하지 않아야 하고, 판매 대행업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공급할 경우 공급한 수량에 대하여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물품관리관 등의 물품출납 명령(결제) 등을 받고 출납 하는 등 잔액 물품대장의 재고와 현품이 일치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를 확인 한 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입·출고에 대하여 재고 관리 등을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제작한 총량수량과 불출한 수량을 대비하여 잔액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고관리⁷⁾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기간 중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생산 중 여분 발생분을 추가 입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부정 유통의 방지를 위해 추가 제작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출납공무원의 결제 없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행업체에 판매(출납)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7)과거부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정확한 재고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액 수량이 남은 시점 추정 불가

[표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재고 파악 현황

(단위 : 장)

구 분	재고상 잔량	실제보관 수량	차액(A-B)	비고
합 계	619,000	679,500	60,500	
공공용봉투(50L)	40,000	39,500	-500	
종량제봉투(10L)	188,000	218,000	30,000	
종량제봉투(20L)	29,000	38,000	9,000	
종량제봉투(재사용 20L)	107,000	117,000	10,000	
음식물봉투(10L)	224,000	226,000	2,000	
음식물봉투(20L)	31,000	41,000	10,000	

* 도 감사관실, 영덕군 □□□□ 재고 조사 결과 재구성

그 결과, 종량제 봉투의 총량수량과 현품 잔액수량이 불일치하여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었거나, 사적 이용 및 재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중 추가 여분 입고 물량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유통방지를 위하여 폐기처분 등 재고관리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영덕군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 경고 조치합니다.(기관경고)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 ■■■■■■■■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이에 따른 이행보증금, 행정대집행 등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⁸⁾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8)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①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필요, ②토지 붕괴로 인건 건축물, 공작물 손괴 우려, ③토석 발파로 낙석, 먼지 등 피해 우려, ④토석을 운반차량 환경오염우려, ⑤토지의 형질변경 등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르면 다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3항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5-3-1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에 영덕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확보를 위해 수허가자에게 이행보증서 (허가기간, 보증금액, 허가자 기재 등)로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허가일자, 준공일 등 주요 사항을 기록한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업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되지 않고 허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 기간 연장을 안내하여 이행보증금을 확보하거나, 허가 취소, 원상회복 등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이나 87건 1,279,877천 원의 이행보증금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영덕군 개발행위허가 허가기간 만료 현황

(단위 : 건, 천 원)

연도별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대상	허가기간 종료 건수	미확보 이행보증금	비고
합계	1,171	87	1,279,877	미준공
2020	235	26	375,373	
2021	306	20	318,670	
2022	287	35	505,734	
2023	197	5	68,100	
2024.10월	146	1	12,000	

* 영덕군 ■■■■■■■■■■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완료되지 않은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담보가 확보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 수허가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가 불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이행보증금 징구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병합), CCC **혼계** 처분하시고, DDD, EEE는 **주의** 처분 하시기 바라며,
- ④ 관련자 FFF(병합)은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법정 의무소독 대상 관리 소홀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 ○○○○○○에서는 병원균과 바이러스, 쥐·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관내 숙박시설, 집단급식소,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 시설물을 소독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영덕군 법정 소독의무시설 현황 및 의무소독기간

(단위 : 개소)

합계	숙박 시설	식품 접객 업소	버스	전통 시장	병원	급식소	공연장	학교	건축물	유치원, 어린이집
172	49	27	11	4	3	13	2	20	26	17
의무 소독기간	4~9월 소독횟수 : 1회 이상/ 1개월 10~3월 소독횟수 : 1회 이상/ 2개월					4~9월 소독횟수 : 1회 이상/ 2개월 10~3월 소독횟수 : 1회 이상/ 3개월				

* 영덕군 보건소 ○○○○○○ 제출자료 재구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감염병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횟수 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따른 별표7)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51조제3항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소독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¹⁰⁾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영덕군 ○○○○○에서는 매년 1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소독기준에 맞도록 소독을 실시하라고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등록된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업체에서 소독증명서 등을 보건소에 통보되어 소독 시행 여부를 영덕군 방제지리정보시스템¹¹⁾에 입력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소독기준에 따른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소독 실시를 독려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영덕군은 한해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체류형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역으로서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감염병 예방 위해 적절한 소독이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하도록 조치 하는 등 집중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9)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하는 시설) 관광숙박업소(객실20개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시내버스, 역시설,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급식소,기숙사, 합숙소, 위탁급식업, 공연장, 초중고학교, 등

10) 의무소독위반 과태료 : 1회 위반시 50만원, 2회이상 100만원)

11) 방제활동 자료 전산화를 통한 방역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효율성,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질병관리청)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소독이행 여부와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2021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하지 않거나 소독 의무 횟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시설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연도별 법정 소독 미이행 현황 (의무소독 1회미만 미이행 업소 기준)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숙박 시설	식품접객 업소	버스	전통시장	급식소	공연장	학교	유치원	건축물	어린이집
2024년	76	20	17	6	4	5	2	5	4	9	4
2023년	69	22	9	6	4	5	2	6	7	5	3
2022년	66	17	6	6	4	6	1	5	9	9	3
2021년	66	15	6	6	4	6	1	9	7	9	3

* 영덕군 보건소 방제지리시스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법정 의무소독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④ 관련자 CCC, DDD, EEE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사도개설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 ◇◇◇에서는 사도개설자의 사도개설 허가 및 공사 후 허가 기준에 맞게 개설되었는지 사용·검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도를 개설하려는 자는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설계도, 타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허가 불가¹²⁾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하며 그 전제로 사도의 공사를 마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준공도서, 지적측량성과도, 사도의 유지·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도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사도개설자의 사용검사 신청을 접수하여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한 이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여 사용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전에는 사도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2)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사도 개설 공사가 완료된 후 사도개설자의 사용검사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개설된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사도 부지가 타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¹³⁾에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이 있는지, 사도와 연결되는 공도와와의 통행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공도의 관리부서와 협의 사항이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사도개설자가 실질적인 사도관리의 법적인 주체로서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사도가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 7. 1. *** ** *00-0번지 일원에 사도개설자 @@@에게 최초로 사도개설허가를 고시한 이후, 2023. 6월 경 사도개설자 @@@이 상기 사도개설허가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공사”의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음에도 2024.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또한 상기 준공검사원이 사도개설의 사용검사 요청으로 법정서식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검사의 첨부 서류인 사도의 유지·관리 계획서가 제출되지

13)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않았으며, 해당 사도 부지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로 *** ** *00-0번지의 경우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도가 연결되는 도로가 영덕군 ◇◇◇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도로 관리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데도 보완 조치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도개설자가 2024. 10. 28. 감사일 현재 「사도법」상 관리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도를 관리하고 사용검사 전에 사도를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표] 사도개설 고시 재산 현황

(단위 : m²)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계			32,781	2,830
(The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그 결과 “사도”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행정청에서 관련 행정처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사도의 위법 사용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지원 및 보조금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 ♠♠♠♠♠(전 〇〇〇〇〇)에서는 2021. 7. 12. 설립한 사단법인 *****
가 추진하는 회원역량강화 교육사업 등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1. 농업회의소 운영비 예산지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인
단체 등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운영 및 활성화’ 등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 동안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29,000,000원을 편성
하여 사단법인 *****{이하 “(사)*****”라 한다}으로 보조금 교부하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사무실 운영’ 항목으로
보조사업 세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각각 10,000,000원과 12,000,000원을 지원하고
2024년도에도 ‘***** 운영’ 항목으로 보조사업 세부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12,000,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다.

[표 1] (사)***** 운영관련 예산지원 내역

연도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원)			세부 사업내용
			계	군비	자부담	
계	-	-	129,000,000	129,000,000	-	
2022년	X					
2023년						
2024년						

2.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6조제2항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목) 중 사무관리비는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소규모 용역비 등으로 구분하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은 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용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는 (사)*****가 “법무사 ***”에 의뢰하여 2021. 7. 12.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서 발생한 등기 위탁 수수료를 비롯한 아래 [표 2]와 같이 (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986,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2] *****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내역

지출건명	지출 발의일자	지출 내역	지출금액(원)
합 계	-	3건	986,000
X			

3.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 확정하여 통보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사)*****가 '2022년 ***** 운영 및 활성화사업' 보조금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의 물품을 4,458,000원에 구입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사)***** 지원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내역

구입 건명	규격 및 수량	구입일자	구입금액(원)
합 계	-	-	4,458,000
(이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기관 경고·시정요구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등 10개 부서
내 용

영덕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사를 담당하고 ♠♠♠♠♠(전 ▼▼▼▼)에서 총괄하고 있다.

「농지법」 제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 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시장·군수는 농지의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리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영덕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통지하여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한편, *****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보고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읍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시군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확정하도록 보고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를 비롯한 9개 읍면사무소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한 2022년도와 2023년도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조사대상 건수 중 휴경으로 조사된 농지가 2022년에 3,165건, 2023년에 3,384건이 있는 것으로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도 처분대상 또는 원상회복명령대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면사무소에서는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 724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1건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723건에 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면사무소에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947건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표]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단위 : 건)

연도별	구 분	합계	***	***	***	***	***	***	***	***	***		
2022년	조사대상	7,054	X										
	조사 결과	휴경											3,165
		결과 미입력											1,538
2023년	조사대상	7,432											
	조사 결과	휴경											3,384
		결과 미입력											999

* 자료출처 : 감사대상기관 농지정보시스템 추출자료 재구성

또한, ♠♠♠♠♠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총괄하면서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농지정보시스템에 휴경으로 등록하거나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사항을 시스템 조회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5,225필지, 638.8ha에 대하여 처분의무부과와 원상회복명령 농지가 없는 것으로,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5,159필지, 636.7ha에 대하여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와 농지 처분의무 부과 대상이 없는 것으로 2024. 1. 4.과 2024. 5. 27. 각각 ****(♠♠♠♠♠)에 공문으로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농업경영과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휴경 등으로 농지의 취득목적에 이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을 소홀한 영덕군에 대하여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경고 처분하오니 앞으로 농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기관 경고)
- ② 또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휴경 등으로 조사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군도00호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 ◇◇◇에서는 통행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보행환경개선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The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1. 사업인정의제 사전협의 미이행 및 보상업무 추진 부적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군도00호선 *****~*****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권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여 협의보상 추진 중으로
 원활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 및 지장물의 사용 및 취득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사 계약(2023. 7. 5.) 후 12개월이 지난 2024. 7. 9. 감정평가 의뢰를
 하는 등 보상업무를 지연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보상 및 지장물 이설지연 등을
 사유로 아래 [표 2]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시공중지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공사
 기간이 당초 6개월(‘23. 7. 10. ~ ‘24. 1. 5.)에서 22개월(‘23. 7. 10. ~ ‘25. 4. 24.)로
 변경되어 사업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시공중지 중이다.

[표 2] 시공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현황

(단위: 백만 원)

차수	당초	변경	변경계약일	연장사유	비고
1차	‘23.07.10.~’24.01.05.	‘24.07.10.~’24.04.13.	‘23.09.12.	보상,지장주 이설지연	
2차	‘24.07.10.~’24.04.13.	‘24.07.10.~’24.06.13.	‘23.11.14.	보상,지장주 이설지연	
3차	‘24.07.10.~’24.06.13.	‘24.07.10.~’24.11.06.	‘24.04.08.	보상,지장주 이설지연	
4차	‘24.07.10.~’24.11.06.	‘23.07.10.~’25.01.22.	‘24.07.24.	보상,지장주 이설지연	
5차	‘24.07.10.~’25. 1.22.	‘23.07.10.~’25.04.24.	‘24.09.11.	보상,지장주 이설지연	

2. 사업 착공전 사전절차 추진 부적정

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¹⁴⁾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군도00호선 *****~***** 보행환경개선사업” 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추진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법률 제16272호, 2020. 1. 16. 시행)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14)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그리고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이거나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게 하는 공사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8]제2호에 따르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일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전일까지 이를 증명하는 기술 지도계약을 제출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군도00호선 *****~*****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사업 착수 1년이 도과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도급 착수일	기술지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내용 없음)					

3. 설계도서 검토 미흡에 따른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군도00호선 *****~*****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를 부실하게 검토하여 2023년 개정된 흙관부설 사항을 미반영

하고, 유로폼 시공 가능 공정에 고가의 합판거푸집을 반영하여 발주하는 등 11,300 천 원 (제경비 포함)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품질 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관리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m² 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시험 계획과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품질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군도00호선 *****~*****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품질시험실 미설치, 품질관리비미반영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실을 설치하고 품질관리비 반영하여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병합),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 * * * , ◇ ◇ ◇ , ♀♀♀ , ◆◆◆◆◆ , ♂♂♂♂♂
내 용

영덕군 * * * * *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 * * * 조성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1. 공유수면 협의 전 공사 시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르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덕군 * * * * *에서는 공유수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영덕군 * * * * *의 요청으로 ◇◇◇에서는 *** **** * 부지 평탄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를 시행(2024. 3. 20.)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없이 부지 평탄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 * * * *에서는 * * * * *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2024. 4. 5.) 전 *** **** * 부지 현장을 확인하고도 이전에 ◇◇◇에서 시행한 굴착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하였다.

2. 실시설계 용역 중 다수의 공사 선 분할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 * * * *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구조물·단일공사 등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또는 공사량이 임의로 분할·분리되어 계약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 계획단계부터 분할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발주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4개 부서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선분할 발주하였으며, 공사 내용이

유사하고 통합발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부서의 역량 부족 및 잔디 식재가 시급하다는 사유로 해당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필요 시 마다 공사를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14건, 총 사업비 165,471천 원)가 발생하였다.

[표 2] *** ***** *** 조성공사 관련 사업 현황

연번	부 서	공 사 명	사 업 량	사업비(천 원)	시행일	비고					
1						설계					
2						견적					
3						견적					
4						견적					
5						☆☆☆☆	견적				
6						☆☆☆	견적				
7							견적				
8							견적				
9							설계				
10							견적				
11						◇◇◇					견적
12											설계
13											설계
14						###					견적
15	견적										
16	\$\$\$\$\$					견적					

그 결과 동일 부지 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토공 작업을 *** ***** *** 부지평탄화 작업 장비임차(11번 사업) 및 *** ***** 마사토 구입 (4번 사업)에 따른

장비임차를 시행으로 부지 내 배수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며, 책임 구분이 불분명하여 * * * * *에서는 * * * * * 조성공사(9번 사업)의 설계 변경 시 유공관 설치를 추가 시행하는 등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 * * * *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분할 발주를 시행하여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사감독업무를 이행하였고, 사업 물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에서 시행한 * * * * * * * * * 부지 조성공사는 보도용 블록 철거가 주 공종 임에도 보도용 블록 설치 품으로 적용하여 사업비 12,035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며,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정책사업의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영덕군 ◆◆◆◆에서는 *** 관광지 시설물 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출과목(세부사업 : 관광지 운영관리)과 다르게 관광지 외 구역에 시설물(파고라)을 이설하여 설치하였으며, \$\$\$에서는 *** **** *** 조경수 이식 사업을 ◇◇◇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4. 품질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20m²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덕군 * * * *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품질관리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시험 계획과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품질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품질시험 계획 미수립, 품질시험실 미설치, 품질관리비 미반영 등 시험시설 및 인력의 미확보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 CCC, DDD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관련자 EEE(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④ 관련자 FFF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소하천, ** 소하천, **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The table body is currently empty and crossed out with a large 'X'.)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¹⁵⁾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소하천 등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폐지를 포함한다)·고시·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등의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을 정비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제사항에 대하여 영덕군 ♣♣♣♣♣♣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고 소하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1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설공사의 사업비 합계가 40억 원 이상이고,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사업에 반영된 사석(4,930m³)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 검토 및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하여 36,660천 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하였다.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¹⁶⁾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계획에는 제1호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제4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소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회신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 영향 저감 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는¹⁷⁾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5.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공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17)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및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반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 소하천 정비사업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설계서 상 식생옹벽블럭 속채움에 필요한 토사 수량을 사토수량에서 공제 하지 않고 사업비 24,97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공사 중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시스템 비계는 의무사용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설계상 일부 구간은 강관비계로 반영되어 사업비 1,54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었고, 교량 교대부 잠석부설 및 다짐은 진동롤러로 작업함이 더 효율적임에도 램머로 반영 되어 있어 사업비 58,74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나. ** 소하천 정비사업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설계변경 1회시 식생옹벽블럭 설치구간의 뒷채움

자재를 현장 유용석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사토량에 대한 통제 없이 사업비 26,290천 원을 초과 계상하였으며, 1차분 공사 시 호안공부터 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토를 이용하여 임시 가설 도로를 설치하였음에도 미 이행된 순성토(토사) 운반에 대한 사업비 62,189천 원(제경비 포함)을 제외하지 않았고 준공 시 정산 항목인 부지임대료(미정산금 약 24,986천 원), 안전관리비(미정산금 약 76,770천 원) 사용금액을 확인 및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하천공 호안의 필터매트는 550g/m² 규격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에선 350g/m² 규격으로 설치하였음에도 사업비 9,8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설계서에 반영된 가설공사에 대한 토사구간 말뚝박기(천공) 단가는 지층별 평균 천공길이에 대한 m당 단가가 산정이 되는데 설계도면 상 지층별 천공길이가 11.9m에 따른 단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설계서 내 단가산출서에는 지층별 천공길이를 1m로 적용하여 1공당 작업시간을 과도하게 산정하였으며 예정 가격 작성을 위한 설계 단가가 초과 계상된 채로 공사 발주되어 사업비 239,540천 원(제경비 포함) 예산이 낭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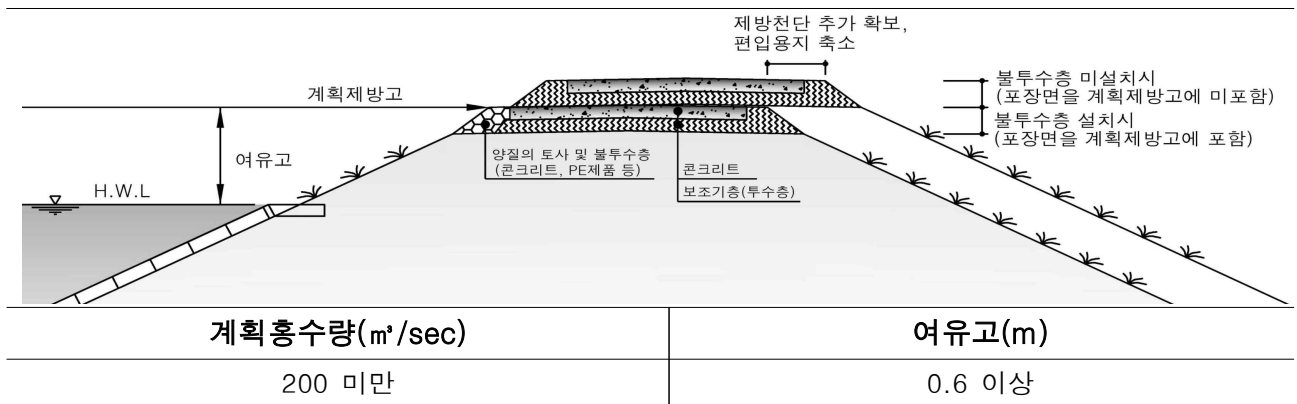
다. ** 소하천 정비사업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교량 교대부 등 대형다짐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소형 장비로 반영하고 가설사무실 일부만 설치하였으며 면적 감소에 따른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아 사업비 59,639천 원(제경비 포함)을 초과 계상하였다.

6.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 제방 여유고 미확보

「소하천설계기준」(행안부고시 제2024-19호) 제7장 소하천 하도시설 제2절(소하천 제방) 4.1 설계일반에 따르면 소하천 제방¹⁸⁾은 소하천 내 유수가 월류하여 제내지층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제방의 높이는 통상 계획홍수량 유하 시 발생하는 계획홍수위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하천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최소로 확보해야 하는 여유고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소하천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제방은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여 소하천이 월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좌안 7개소, 우안 9개소 구간이 소하천 설계기준과 맞지 않게 설계되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하였으며 홍수에 대한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하는 등 향후 해당 구간에 대해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방 보강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18) 홍수 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표 2] ** 소하천 정비사업 여유고 부족 구간

측점(No.)	계획 홍수위 (EL.m)	좌안 제방고 (EL.m)	좌안 여유고 (EL.m)	우안 제방고 (EL.m)	우안 여유고 (EL.m)	비 고
97	11.89	12.07	0.18	12.13	0.24	좌·우안 부족
97+5	11.86	11.78	-0.08	11.70	-0.16	좌·우안 부족
127	6.56	산지	-	7.04	0.48	우안 부족
128	6.45	산지	-	6.89	0.44	우안 부족
129	6.29	산지	-	6.83	0.54	우안 부족
133	5.73	6.71	0.98	6.29	0.56	우안 부족
134	5.57	6.47	0.9	6.06	0.49	우안 부족
157	2.38	2.90	0.52	3.13	0.75	좌안 부족
158	2.35	2.84	0.49	3.00	0.65	좌안 부족
159	2.31	2.73	0.42	2.99	0.68	좌안 부족
160	2.28	2.62	0.34	2.99	0.71	좌안 부족
161	2.25	2.52	0.27	2.77	0.52	좌안 부족
162	2.21	2.85	0.64	2.72	0.51	우안 부족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44,889,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200,035,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 하시기 바라며,
- ⑤ CCC(병합), DDD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선정 절차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
내 용

영덕군 ㉸㉸㉸㉸㉸ 외 1개 부서에서는 “**** ** ***** 설치공사” 외 1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절차¹⁹⁾를 진행하였다.

[표-1]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사업명 (발주부서)	공법명	공법제원	사업비 (억원)	공고번호	위원회 개최방법	비고
X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방법 부적정

가. **** ** ***** 설치공사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2관(공법선정 절차)에 따르면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하고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 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9) 평가기준 확정 → 평가위원 모집 공고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정성평가 → 평가결과 공개 → 공법선정자 통지

따라서 영덕군 ㄱㄱㄱㄱㄱ에서는 “***** ** 설치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재공고 결과 제안참여자가 1인인 경우로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한지 여부와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하고, 제안참여자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은 제안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법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설치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제안 참여자에게는 공법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들에게는 공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서를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만 서술하여 작성하도록 평가서를 배부하고 평가서를 제출받은 뒤 평가내용을 발주부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하였다.

나. **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3관(공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 참여자는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하고, 제안참여자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은 제안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법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제안 참여자에게는 공법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들에게는 공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되어 위원회가 심도 있고 공정 하게 평가 되지 않게 되었다.

2.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 정량평가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2관-6(제안서 평가)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정량적(객관적) 평가는 아래 [표 3]과 같이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 따라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아래 [표 4]와 같이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항목(제품의 우수성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여 공법선정에 필요한 정량평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

[표 4] 정량(객관적)평가 기준(2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2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20)	공사비	- 제안된 공사비/평균공사비	5	사업담당자가 평가
	시공실적	-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 최근 5년간 실적 금액	3 3	
	제품의 우수성	- 제안 제품의 방재신기술 보유 여부	2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5	
	기술능력평가	- 경상북도 내 지역업체	2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내 용

영덕군)))))))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The table body is currently empty and crossed out with a large X.)								

1. 설계변경 원가심사 미이행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 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제2절 및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의하면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시·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D D D D D D에서는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10% 이상 증액이 발생하면 경상북도에 설계변경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누적 변경금액 (E/S금액 제외)이 아래의 [표 2]와 같이 10% 이상 증가 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총 2회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설계변경 계약 후 준공하였다.

[표 2] 설계변경 내역

(단위 : 천 원)

회 차	당 초	1회 변경	2회 변경
계약일자	2020. 9. 2.	2022.12.20.	2023.11.15.
계약금액	8,033,000	11,507,000	11,938,000
증감금액	-	3,474,000	431,000
E/S금액(물가상승분)		1,240,701	1,507,716
누적 증감 비율(E/S금액 제외)	-	27.80%	29.84%

※ 영덕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 업무 소홀

가. 실정보고 승인처리 미이행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검토 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 결정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 등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48조에 따르면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및 확인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㉔㉔㉔㉔㉔㉔에서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 방침 결정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및 확인 하고 발주청에 방침을 득한 이후 시공자에게 승인 요청일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 등 5건에 대한 실정보고 서류를 제출받았음에도 미승인한 채 시공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3] 실정보고 미승인 현황(**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단위 : 천 원)

연번	지적사항	당초		변경		공사비증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건		43,648		235,790	192,142	
1	연암 발견 등	-	2,900	143m ³	6,100	3,200	미승인
2	관로표지못→지능형표지못	700EA	19,948	700EA	49,400	29,452	미승인
3	관급자재→사급자재 (주철뚜껑 등)	-	-	1식	23,900	23,900	미승인
4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 (1.96km → 14.09km)	1식	20,800	1식	28,820	8,020	미승인
5	부직포 설치	-	-	56,867m ²	127,570	127,570	미승인

※ 영덕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²⁰⁾(TOCYCLE) 정보 미입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인 영덕군 D D D D D D에서는 본 공사의 사토량이 24,234m³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 따라 이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토석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20)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다. 공사원가 검토 및 사업비 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21)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공법변경 및 투입 자재를 변경하여도 목적인 품질의 확보가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에서는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공사무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①합판거푸집에서 유로폼으로 임의 변경 설치로 402천 원, ②절삭 후 아스팔트

2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의 변경

덧섞우기 원가 산정 시 택코팅 작업 중복 적용으로 26,578천 원, ③관 부설 원가 산정 시 관로표지테이프 부설 작업 중복 적용 34,963천 원, ④기사배수지 소운반 실운반거리를 미정산으로 2,303천 원, ⑤안전보호책 미설치(설치 및 철거품 포함)로 80,890천 원 등 총145,136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45,136,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④ 관련자 CCC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축산(영덕) **** 조성사업 (***** 등) 외 1건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The table body is currently empty and crossed out with a large X.)								

1. 사업 착공전 사전절차 추진 부적정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행정절차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영덕군 ◆◆◆◆에서는 *** **** **관광지 조성사업(도로)을 추진하면서 지형도면 등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공사를 착수, 시행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²²⁾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

22)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감독자의 배치 계획,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①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청은 같은 법 제39조의2,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제출서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관광지 조성사업(도로) 착공 전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18㎡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설공사의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대해 착공 시 품질관리자 배치 내용을 포함한 품질시험계획을 건설사업자에게 제출 받아야 하며, 이를 검토 후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인 *** **** **관광지 조성 사업(도로)를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착공 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관련법 협의결과 미이행

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미이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착공통보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고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축산(영덕) ****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경상북도 *****-1270(2022. 3. 15.)호로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공사 설계 변경 시 행정안전부 및 승인기관 협의 없이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를 임의 삭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착공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관리대장을 소홀히 관리하는 등 재해영향평가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 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 *****-16599(2023. 7. 18.)호로 회신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에 따르면 협의의견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협의내용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축산(영덕) ****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 설계 변경시 환경부 및 승인기관 협의 없이 임시침사지, 가배수로를 임의 삭제하고,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 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는²³⁾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3. 공사감독 업무 소홀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 사용 미준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km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km 이상인 공사에 대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관광지 조성공사(도로)”를 추진하면서 폭이 4.0m이고, 길이가 1km로 관련법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대상임에도 의무 사용하지 않아 사업비 8,599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²⁴⁾(TOCYCLE) 정보 미입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

23) 협의내용에 따르면 관리대장에 침사지 등 관리현황을 기록·비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침사지 등 관리현황을 기록하지 않음

24)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 따라 이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축산(영덕) ****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토량이 4,250m³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토석 정보 입력 대상임에도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다.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축산(영덕) **** 조성사업(***** 등)”을 추진 하면서 외부토사 반입 시 상차 중복 적용 및 거푸집 임의 미설치로 18,300천 원 (제경비 포함)을 감액조치 하지 않은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26,899,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피난 및 방화구조 관련 건축허가(신고)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덕군에서는 2024. 2. 2. \$\$\$ \$\$\$\$ 0-00번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허가 등 8건과 2022. 9. 21. \$\$\$ \$\$\$\$ 000-0번지 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 등 5건의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소방관 진입창 및 방화유리창 설치 부적정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의하면 11층 이하의 층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의하면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높이 1.2미터 이상,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 이중유리 사용 시 그 두께는 24밀리미터 이하여야 하는 등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25)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25)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 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에서는 건축물의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외벽의 창호는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부적절할 시에는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영덕군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0-00번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변경(건축주 : *****) 등 2건의 건축허가 시 소방관 진입창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소방관 진입창 미설치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층수	신고일 (사용승인일)	비고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또한 영덕군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 000-0번지 상 단독주택 증축(건축주 : @@@) 등 3건의 건축신고 시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터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조치 없이 건축허가(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방화유리창 미설치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층수	신고일 (사용승인일)	비고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부적정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의하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아래 [표 3]과 같이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 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처리 시에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 상의 복도의 유효너비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부적절할 시에는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건축허가 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에는 그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복도의 유효폭 미달인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4] 복도의 너비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허가일 (사용승인일)	복도너비		비고
						적정	설계	
(Empty table body)								

3. 건축물 내화구조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²⁶⁾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하면 건축물의 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6)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 : 시간)

용도		구성		벽						보·기둥	바닥	지붕·지붕틀
				외벽			내벽					
				내력벽	비내력벽		내력벽	비내력벽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간막이벽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용도구분	용도규모 층수/최고 높이(m)											
일반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1	0.5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축허가 시 수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주요구조부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할 시에는 시정 및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 \$\$\$\$ 0-00번지 상 수련시설 증축(건축주 : *****) 등 2건의 건축허가 시 수련시설 및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주요구조부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5] 내화구조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층수	허가일 (사용승인일)	비고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4. 건축물 마감재료 부적정

「건축법」 제52조,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대통령령²⁷⁾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건축물의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와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난연성능이 표시된 시험 성적서가 포함된 품질관리서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내부의 마감재료와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에 내·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이 표시된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품질관리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6]과 같이 \$\$\$ \$\$\$ 00-0번지 상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등 4건의 건축허가(신고) 시 내·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연 성능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27)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포함한 품질관리서의 검토 없이 사용승인을 처리하는 등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조치 없이 건축허가(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6] 마감재료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신고일/허가일(사용승인일)	시험 성적서	비고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5. 방화구획 부적정

「건축법」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쿨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방화문²⁸⁾ 또는 방화셔터 등의 구조물로 구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28) ①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②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처리 시에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 상의 방화구획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부적절할 시에는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7]과 같이 \$\$\$ \$\$\$ 000-0번지 상 공장 증축허가(건축주 : @@@) 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공장의 증축으로서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방화문 등의 구조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7] 방화구획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허가일 (사용승인일)	비고
(The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 CCC(병합), DDD(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영덕군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덕군
 관 계 부 서 읍읍읍읍읍, ♣♣♣♣♣♣
 내 용

영덕군 읍읍읍읍읍에서는 “영덕군 ***** 건립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1] 영덕군 ***** 건립공사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명	도급자	계약금액 (변경)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비고
공사	X						
건설 사업 관리							

※ 공사감독 업무 : ♣♣♣♣♣♣ 기술공사지원팀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²⁹⁾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29) ①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④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①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영덕군 *****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피난 및 방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³⁰⁾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 : 시간)

구 성 부 재		벽								보· 기둥	바닥	지붕· 지붕틀	
		외벽				내벽							
		내 력 벽	비내력벽		내 력 벽	비내력벽		보· 기둥	바닥				지붕· 지붕틀
			연소우려 가 있는 부분	연소우려 가 없는 부분		간막이벽	승강기· 계단실의 수직벽						
용도구분	용도규모 층수/최고 높이(m)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일 반 시 설	문화 및 집회시설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1	0.5	

그리고 같은 법 제5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하면 건축물의 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 성능, 품질관리 등 위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되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과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0)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축허가 시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주요 구조부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설계되었는지와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부적절할 시에는 시정 및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영덕군 ***** 건립공사”에 따른 건축협의 요청 시 신청 사항을 검토하면서 해당 건축물이 수련 시설의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및 마감재료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철골조 기둥의 내화구조와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 재료를 적용하지 않은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건축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부적정

가.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 등 부적정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현장조사·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³¹⁾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이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축설계 및 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사무소 상생호에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시행한 “영덕군 ***** 건립공사”의 설계자(건축사사무소 *** : @@@)는 “영덕군 ***** 건립공사”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아래 [표 2]와 같이 추진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수련시설로서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마감재료를 적용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적용하였으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내화구조 및 마감재료를 적합으로 조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등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건축허가 처리되도록 하였다.

[표 2] 건축협의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용도	허가일	허가내용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The table content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나. 건설사업관리 부적정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공사감리자(***** 사무소 : @@@)에게 건설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알린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 등을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 추진한 “영덕군 ***** 건립공사”의 공사감리자(***** 사무소 : @@@)는 해당 건축물이 내화구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조부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사 중에 내화구조 적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그 결과 본 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추진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내화구조 적용 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로 주요구조부가 시공이 됨에 따라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 적용을 위한 지붕 해체 및 재설치, 내화페인트 도장 등 사업비 3,55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4. 공사감독 부적정

가. 하도급 현장배치기술자 배치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³²⁾을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7조에 의하면 감독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시험의무 등 관련법규에 부적합 하였을 때 등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감독자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검토·경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 임명된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면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등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부적정할 경우에는 교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32) 공사에정금액 3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 시행 한 “영덕군 ***** 건립공사” 추진과정에서 공사 감독자로 지정된 **8급 @@@(2020.11.26. ~ 2021.06.30.)는 아래 [표 3]과 같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계획서 제출 시 현장배치기술자의 걱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적합한 현장배치기술자의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공종	상호	하도금액 (변경)	계약일	착공일	현장배치 기술자	적정 여부	비고
철근 콘크리트	X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철근 콘크리트							

나. 설계서 등의 검토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에 의하면 공사 착수단계에서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같은 지침 제134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사로부터 공사 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142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 임명된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단계에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조건에 부합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사 시행단계에서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 시행 한 “영덕군 ***** 건립공사” 추진과정에서 공사감독자로 지정된 **8급 @@@(2020.11.26. ~ 2021.06.30.)와 **8급 @@@(2023.07.18. ~ 감사일 현재까지)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서 등의 현장 조건 부합 여부 및 상호 일치 여부 등의 시공자 검토 미지시, 시공자의 시공계획서 누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건축허가 시 누락된 내화구조가 감사일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정산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테이블, 벤치 등 공사와 관련 없는 물품을 반영하여 18,906천 원, 시스템동바리 물량 산정 시 층고에서 바닥 두께를 공제하지 않은 높이로 산정하여 3,140천 원 등 총 사업비 27,606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았으며, 당초 도급업체 **건설(주)의 계약해제 및 해지에 따른 정산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 없이 계약금액 그대로 대가를 지급하여 사업비 3,284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50조에 적합하도록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또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공사감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④ 과다 계상된 사업비 27,606,000원(제경비 포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⑤ 관련자 AAA, BBB(병합), CCC(병합)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⑥ 관련자 DDD, EEE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